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47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이학영·김영배·전재수

진성준 • 김영진 • 김교흥

박정현 • 박해철 • 한민수

윤호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·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 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·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 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.

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

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방재지구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지하층) ①·② (생 략)	제53조(지하층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방재지
	구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
	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
	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
	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
	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침수피
	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등
	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
	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
	은 제3항에 따라 침수예방시설
	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
	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